

□ □ □ - □ □ □

수납인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 m²(재활용품))

(뒤쪽)

접는선

제 호

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(수납기관용)

경찰청

납부자: 주민(법인)번호: -*****

세입징수관	계좌번호

과태료 금액		납부기한	~
--------	--	------	---

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.
은행(우체국) 지점

년 월 일

시·도경찰청장
경찰서장

직인

수납인

접는선

<안 내 말 씀>

- ❖ 앞쪽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(수납) 대리점인 은행,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내시기 바랍니다.
- ❖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납부기한 내에 우리 경찰서(시·도경찰청)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- ❖ 이의제기 없이 기한 내에 내지 않으실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5/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1개월 경과 시마다 12/1000의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또한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,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(監置)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❖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